

수원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1가합269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2167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1가합26942 판결

전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피고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우

2.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인구, 고유진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구

변론 종결 2023. 5. 3.

판결 선고 2023. 7. 1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별지 1 제1항 내지 제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A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별지 1 제1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A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별지 1 제18 및 제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A는 소외 회사에게 별지 2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피고 주식회사 B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별지 1 제1항 내지 제1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소외 회사에게 별지 3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피고 C과 소외 회사 사이에 별지 1 제1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과 소외 회사 사이에 별지 1 제18항 및 제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0. 체결된 추가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소외 회사에게 별지 4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제○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E	2018. 10. 31.	2021. 10. 29.	270,000,000원
2	F	2018. 10. 31.	2021. 10. 29.	540,000,000원
3	G	2018. 10. 31.	2021. 10. 29.	90,000,000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2020. 6. 1. 이후 연 8%)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소외 회사는 2018. 11. 5.경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H은행(H은행은 2021. 6. 28. 아래 1,000,000,000원의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대출금채권을 I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채권양도 전후를 불문하고 'H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1,000,000,000원(= 300,000,000원 + 600,000,000원 +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8. 11. 16. H은행에 별지 1 제17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로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 내지 16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6. 8. 접수 제141302호로 채권최고액을 581,754,000원으로 하여 2020. 6.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7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6. 19. 접수 제152052호로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2020. 6.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 내지 17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7. 8. 접수 제166418호로 채권최고액을 192,629,800원으로 하여 2020. 7.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7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9. 3. 접수 제205344호로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여 2020. 8.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8, 19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11. 10. 접수 제248926호로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2020. 11.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5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6)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8, 19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11. 10. 접수 제249311호로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여 2020. 11. 10.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추가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6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6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등

1) H은행은 2021. 4. 20.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실질적 영업중지, 강제경매 개시문 접수 등을 사유로 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H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21. 6. 23. 907,738,716원(= 이 사건 제1신용보증 관련 271,473,445원 + 이 사건 제2신용보증 관련 545,370,233원 + 이 사건 제3신용보증 관련 90,895,0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2021. 6. 23. 3,472,260원을 회수하여, 미회수 대위변제금 904,266,456원(= 위 907,738,716원 - 위 3,472,260원)이 남아있다. 원고는 2020. 12. 24.부터 2021. 7. 16.까지 채권보전비용으로 합계 5,769,122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16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30.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H은행 명의의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4. 26. 접수 제82160호로 채권최고액을 1,800,000,000원으로 하여 2018. 4. 2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변제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배당표의 작성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9. 주식회사 J에 의해 수원지방법원 K로 강제경매절차가, 2021. 6. 10. H은행에 의해 수원지방법원 L(병합)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위 강제경매절차 및 임의경매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22. 7. 20. 및 같은 달 27. 매각되어 이 사건 제1 내지 6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3) 원고와 H은행은 2022. 9. 8. H은행이 2018. 11. 16. 이 사건 제17 내지 19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42,007,045원을 수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합의(이하 '배당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2. 9. 27. 별지 5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인데,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실현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별지 2 내지 4 기재 배당금 출급채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나 제1, 4호증, 을다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그에 따라 소외 회사가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소외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등 거래처에 대하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원고가 H은행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면 구상권채권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2021. 6. 23. H은행에 대출원리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제1 내지 4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원고는 소외 회사와 새로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2020. 10. 27. 연장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보전채권의 범위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 합계 910,035,578원(= 이 사건 제1신용보증 관련 271,473,445원 + 이 사건 제2신용보증 관련 545,370,233원 + 이 사건 제3신용보증 관련 90,895,038원 - 회수금 3,472,260원 + 채권보전비용 5,769,122원) 및 그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904,266,45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6. 23.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및 배당합의에 기하여 142,007,045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42,007,045원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에서 제외한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 내역 및 가액은 별지 6 기재와 같이 합계 5,986,957,120원¹⁾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 사이에 특별한 적극재산 변동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8, 19부동산은 2020. 11. 9.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4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8, 19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제1 내지 4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인 2020. 11. 9.에 경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8, 19부동산(건물)은 2019. 12.경 완공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 이미 그 재산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 2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0. 6. 8.부터 2020. 11. 10.까지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 내역과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07,764,971원 상당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소외 회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극재산 가액이 증가하는바, 마지막으로 체결된 이 사건 제5, 6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0. 11. 10.을 기준으로 소극재산 내역 및 가액을 살펴본다).

1	화성시	5,815,170	법정기일 2020. 9. 10.
2	H은행	3,390,005,936	
3	원고	900,000,000	
4	피고 주식회사 A	547,914,000	갑 제1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6호증
5	피고 주식회사 B	192,629,800	갑 제1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6호증
6	국민건강보험	7,258,000	
7	피고 C	415,000,000	
8	주식회사 J	76,847,478	2020. 9.경 발생
9	주식회사 P	13,193,820	2020. 4.경 발생
10	주식회사 Q	41,214,069	2020. 5.경 발생
11	주식회사 R	25,410,000	2020. 8.경 발생
12	채불임금(퇴직금 포함)	192,476,698	
합계	5,807,764,971		

① 순번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출원금 합계 3,390,005,936원(= 1,649,144,784원 + 649,887,585원 + 1,090,973,567원)²⁾을 소극재산으로 인정한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의 H은행에 대한 채무액을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원금 합계 900,000,000원을 합한 4,290,005,936원³⁾이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액 900,000,000원을 인정하는 이상, H은행 채무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순번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액 합계 900,000,000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보증금액 270,000,000원 +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보증금액 540,000,000원 +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 보증금액 90,000,000원)을 소극재산으로 인정한다.
- ③ 순번 6: 건강요양보험료 3,031,200원(납부기한 2020. 11. 10.), 연금보험료 3,268,120원(납부기한 2020. 11. 10.), 고용보험료 549,800원(납부기한 2020. 11. 10.), 산재보험료 408,880원(납부기한 2020. 11. 10.), 합계 7,258,000원을 소극재산으로 인정한다.
- ④ 순번 7: 2020. 6. 30. 차용금 100,000,000원, 2020. 7. 10. 차용금 50,000,000원, 2020. 8. 25. 차용금 150,000,000원, 2020. 9. 8. 차용금 100,000,000원, 2020. 9. 16. 차용금 15,000,000원, 합계 415,000,000원을 소극재산으로 인정한다.
- ⑤ 순번 1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 이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는 거래처에 대하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퇴직금 포함) 합계 192,476,698원을 소극재산으로 인정한다.4)

1	S	2016. 8. 10.~2020. 8. 21.	22,760,801
2	T	2020. 5. 19.~2020. 12. 31.	6,500,001
3	U	2020. 2. 3.~2021. 2. 5.	18,098,014
4	V	2018. 3. 15.~2020. 12. 31.	20,000,707
5	W	2011. 1. 21.~2020. 12. 31.	42,001,210
6	X	2020. 2. 10.~2021. 2. 10.	25,324,939
7	Y	2020. 2. 3.~2021. 2. 15.	31,912,668
8	Z	2018. 10. 15.~2020. 12. 21.	25,878,358

1	S	2016. 8. 10.~2020. 8. 21.	22,760,801
합계	192,476,698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AA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원, AB에 대한 채무 368,000,000원, 주식회사 AC5)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99,000,000원, 주식회사 AD에 대한 채무 89,308,000원, AE에 대한 채무 102,384,700원, 주식회사 AF에 대한 채무 129,927,900원을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4, 19,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소외 회사가 위 각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AE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제5, 6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 이후인 2020. 11. 20.에 발생하였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 5,986,957,120원이 소극재산 5,807,764,971원을 상회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위 각 설정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석

판사조민식

판사신지원

별지

1) 원고는 2022. 10.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제11부동산(별지 6 순번 11) 가액을

17,247,920원, M(별지 6 순번 63)의 가액을 1,522,7066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각각 17,247,920원 및 1,522,706원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는 위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N 및 O(별지 6 순번 66, 67) 공유지분이 5798/152936임을 전제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45, 제16호증의 4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각 부동산 공유지분이 4572/19202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유지분을 전제로 N 및 O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 K, L(병합) 배당표(갑 제14호증)를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H은행에 대한 대출원금채무액을 산정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합산한 소외 회사의 H은행에 대한 채무액을 4,325,005,936원이라고 주장하나(2023. 4. 28.자 준비서면), 이는 계산상 착오기재로 보인다.

4)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소극재산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소외 회사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별도로 소극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원고가 제출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제18, 19부동산의 사용승인일자는 2020. 9.

10.이나, 시공자는 (주)AG(AH)인 것으로 확인된다.